

특 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

2018. 4.

특 허 청

특허심사제도과

1. 개정이유

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허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(제9조제2호의2 신설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8. 1. 24. ~ 3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28819호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61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12. (생략)</p> | <p>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</u></p> <p>3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|

<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| |
| 연 락 처 | (042) 481 - 5399 |